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vol.21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2019



• 화사하고 찬란했던 꽃들이 지고  
타오르는 태양과 싱그러운 녹음,  
푸른 바다와 함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반짝이는 별을 찾아  
이번 여름, 바다로 떠나볼까요?



2019년 Vol. 21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PART 1

- 04 권두사 **이근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성기**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 06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08 SPECIAL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09 SPECIAL 틈새 회화

## PART 2

- 10 협회 소식
- 18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2 신기술 소개
- 24 SPECIAL 부산의 명소(다대포)
- 26 SPECIAL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
- 27 SPECIAL 쉬어가는 유머



## PART 3

- 28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39호** -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건삶인 제40호** - 광민건설(주) 대표이사 최형선
- 32 건설산업정보 - Part. 1
- 43 건설산업정보 - Part. 2
- 56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9 SPECIAL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62 SPECIAL 틈새 스트레칭
- 63 SPECIAL 건강 지킴이
- 64 SPECIAL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65 SPECIAL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상담소)
- 66 SPECIAL 취미의 발견



## PART 4

- 68 회원사 현황
- 70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72 SPECIAL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73 SPECIAL 중앙화·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3/4분기 주요 일정 안내
- 74 SPECIAL 독자와 함께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근희입니다.

먼저 코스카레터의 21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발전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시는 원수의 대부분을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는 하절기 조류 발생 등 수질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더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에서 정수, 관로, 가정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24시간 단수 없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조류 발생 등 원수 수질에 대응하기 위해 여과지 등의 정수시설 보강과 함께 정수장을 전면 개량할 경우에는 막공법(MF, UF, NF, RO)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천사태에서 보듯 관로에서의 수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 시는 이미 소블럭이 구축되어 있어 단수를 최소화하면서 관로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려고 합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1984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사업(11년~20년)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조기 완료하고 4단계 개량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관로의 관 세척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수관로 이중화 및 네트워크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배수지의 저류 용량이 평균 공급량 10.5H 정도인 것을 단계적으로 16H까지 더욱 확대하도록 배수지도 증설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사업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분야로서 부산시회의 상하수도 분야 298개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력으로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부산시민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디딤돌이자 협력자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개 노선(114역, 115.2km)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운영뿐 아니라 건설도 직접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사상~하단선과 양산선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두 노선의 완공으로 부산·경남 생활권이 한층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년 이상의 도시철도 건설 노하우와 함께, 시설물 유지보수 인터페이스와 상호 피드백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역사(歷史)는 도시철도 역사(驛舍)의 건설과 함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의 발전은 교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건축의 그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도의 건설기술을 요하는 도시철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의 발전은 비단 우리 도시철도만의 것이 아닌,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해 온 지역 전문건설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최근 MICE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정했습니다. MICE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의 고도화를 이끌 중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꼽힙니다. MICE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와 항만, 공항, 관광의 종합적 교통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건설 환경특성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 전문건설사들이 주축이 돼 지역 기반시설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철도 서비스로서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MICE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확보 하며, 정거장 환경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문건설사 여러분의 소중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사회가 화두인 지금, 우리 지역 건설산업 역시 이때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합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에 우리 공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와 상생하고 더불어 성장해 지역 건설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호 공생하는 지역 건설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 건설산업 성장 엔진이  
다시 불붙기를 기원합니다.”

전성기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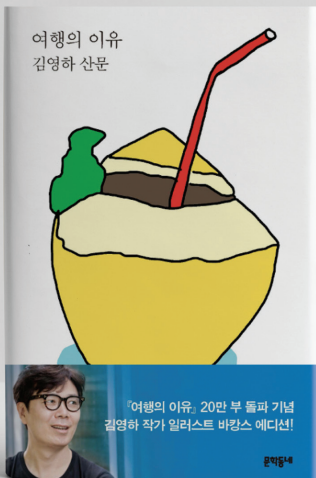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톡툰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송정은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6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위>와 <5위>는 『죽음 2』와 『천년의 질문 3』이 차지했습니다.



여행의 이유 <바캉스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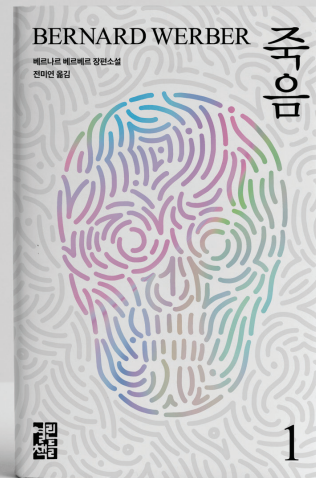


김영하 | 문학동네 | 13,500원

『여행의 이유』는 작가 김영하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을 풀 어낸 여행담이기보다는,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가는 사유의 여행에 가깝다. 작품에 담긴 소설가이자 여행자로서 바라본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들은 놀랄 만큼 매혹적이다.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14,000원

‘누가 날 죽였지?’ 가브리엘 웰즈는 이런 문장을 떠올리며 눈을 뜬 다. 그는 죽음에 관한 장편소설의 출간을 앞둔 인기 추리 작가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브리엘은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한다. 책에서 죽음이라는 소재는 추 리 소설 형식을 통해 무거움을 벗고 경쾌하고 흥미진진하게 다루 어진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수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용의자들 을 추적하다 보면 놀라운 결말을 마주하게 된다.



# Best Seller BOOK



## 천년의 질문



조정래 | 해냄 | 14,800원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천년의 질문』은 거대 자본에 휘둘러 인간을 소외시킨 현 상황을 통찰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편하는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물었을 법한 질문인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치열한 질문에 대한 뜨거운 응답을 던진다.



## 사업을 한다는 것



레이 크록 | 오씨이오 | 16,000원

소프트뱅크 손정의와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인생 바이블’로 꼽는 책이 있다. 일본 산업계의 두 거물은 입을 모아 그 책의 주인공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업을 일으킬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미국 벤처 정신의 상징이자 타임지 선정 ‘20세기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바꾼 인물’ 레이 크록.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라이온 킹

개봉 2019.07.17. | 감독 존 파브로

출연 도널드 글로버(심바 목소리), 비온세(날라 목소리)

### 새로운 세상,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어린 사자 '심바'는 프라이드 랜드의 왕인 아버지 '무파사'를 야심과 욕망이 가득한 삼촌 '스카'의 음모로 잃고 왕국에서도 쫓겨난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심바는 의욕 충만한 친구들 '뽀바'와 '티몬'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친구 '날라'를 만난 심바는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이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위대하고도 험난한 도전을 떠난다.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 심바는 과연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스카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고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월트 디즈니의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 '라이온 킹'이 드디어 실사화에 성공했다. 거대한 야생 사바나 왕국만의 광활한 자연과 추억 속 캐릭터 간의 독보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다.



## 나랏말싸미

개봉 2019.07.24. | 감독 조철현 | 출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아름다운 문자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시대 1443년, 영화는 모든 신하의 반대에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의 마지막 8년을 그린다. 불굴의 신념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식을 독점했던 유신들에 맞서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를 꿈꿨던 세종의 이상이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었는지, 가장 높은 곳의 임금과 가장 낮은 곳의 스님인 세종과 신미의 인연과 협업, 총들의 과정 속에 그들과 함께 한 소헌왕후, 대군들, 신미의 제자이자 도반인 스님들, 새로 태어난 문자를 익혀 퍼뜨렸던 궁녀들까지. 훈민정음 서문의 첫 마디인 '나랏말싸미'를 제목으로 한 영화는 개인의 업적이 아닌 '모두'의 성취였던 한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재미와 울림 속에 전한다.





## 프랑스어 기초 인사말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프랑스인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아침, 점심)	Bonjour. / 봉주흐
안녕하세요.(저녁)	Bonsoir. / 봉쇄흐
처음 뵙겠습니다.	Enchantée. / 영성떼
고맙습니다.	Merci. / 메르시
죄송합니다.	Pardon. / 빠르동
실례합니다.	Excusez-moi. / 엑스퀴제-므와



## 프랑스인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 TIP. 01

프랑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여서  
거래할 때는 이들의 문화 및 종교적 관습이나 금기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 인종 및 종교적인 발언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 TIP. 03

공식적인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인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악수를 한다. 악수를 할 때,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  
어서는 안 되며,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몇 초간 성의 있게  
손을 잡는다.

### TIP. 02

프랑스인들은 시간 개념이 정확한 편이므로 가급적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약속시간보다 빨리  
도착해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실례다.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가는 것이 예의이다.

### TIP. 04

프랑스에서는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등의 질  
문식 인사말은 실례가 된다. 승강기나 버스, 지하철 등 폐  
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주시하는 것 또한 실례이다.

# 협회 소식

## ☺ 제회의 및 행사



### 2019 회계연도 제1차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17일 회장단 및 감사,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회원사의 일거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체제 개편 등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업역 조정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된다”고 말하며, “이럴 때일수록 단합·협력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실적신고 접수결과 및 협회 주요 일정을 보고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를 당부했으며, 협회 중앙회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의 「건설산업 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그간 추진현황 설명과 함께 개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 김효경 건설행정과장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20여 발주기관의 계약·공사감독·건설행정 담당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무 관계자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공사 실 시공자인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지역장비 활용,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로 이어져 부산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참석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김효경 건설행정과장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 등 발주기관, 그리고 협회가 상호 협력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수사례로 보는 공사발주계약 등 건설제도에 대해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으며, 외부강사의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 기행」, 「소통으로 거듭나는 “청림”」, 「웃음힐링(레크리에이션) 소통 액티비티」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 제27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광주시회(회장 이서길)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남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대표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를 가졌다.

이서길 광주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스물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친선교류 행사를 통해 양 시회 회원 간의 형제애 고취는 물론, 영·호남의 화합과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양 시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선임자들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광주시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양 시회 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긴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 양 시회와 회원사 모두의 발전으로 승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연수회에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와 강진군 도암면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다산초당 등을 돌아보며 상호 간 우의를 다졌다.

## 협회 소식



### 2018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 참가자 오찬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7일 「2018년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뉴질랜드)」에 참가했던 회원사 대표 30여 명과 함께 오찬회를 가졌으며, 2019년 협회 주요 행사일정(안)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참석자에게 해외선진건설현장 시찰을 기념하는 앨범을 제작해 배부했다.



###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6월 25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정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 2019 회계연도 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6월 27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조성진 교수를 초빙하여 에너지 및 진공과학에 관한 “과학과 산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시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조성진 교수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중양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2일(15:00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중양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부산광역시 및 구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양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부산시민의 분양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 지역 자재 장비 업체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양1군 건설대기업

에서 시공 중인 대형건설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제 단위를 최대 1년 이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양1군 건설대기업에서도 부산시민으로부터 얻은 분양 수익을 모두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지역에 일감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률 향상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박재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4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과 면담을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현행 탄력적 근로제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단위 기간이 너무 짧고 활용조건이 까다로워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하고, 활용조건도 취업규칙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 등 건설업체에 집중된 보증 부담에 가설기자재 보증까지 더해지면 가설기자재를 직접 대여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가설기자재 대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를 건의했다.

특히, 김세원 회장은 “건설현장 기능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 관계부처에서는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법 외국인 고용에 따른 처벌이 유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함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불법적인 월레비 요구행위 등 불법행위도 건설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협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협회 소식



부산광역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 2019년 상반기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홍보세일즈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태영건설, 대림산업(주), 우미건설(주), (주)한양, 진흥기업(주)을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회와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과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건설대기업들은 협회와 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건설공사 실 시공자인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건설근로자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자재 생산업체, 건설장비 임대업체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하도급 참여율에 따라 적용하는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시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공공공사에 대한 지역 하도급 참여비율 목표치를 85%로 상향하고 건설단체와 건설업체, 인·허가기관과의 간담회도 정례화한다고 밝혔으며,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 활성화 유관단체 간담회 참석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13일(14:30 / 부산시청 24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회 부산시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지역건설 활성화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광역시는 인허가 절차별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과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착한 기업 인증제 추진정책을 안내했으며, 재개발 정비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민·관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한



### 부산광역시 합동 대형건설현장 하도급실태 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5월 31일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조경공사」 등 지역 내 3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시회는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시공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2019년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조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현장 등 대형건설현장 8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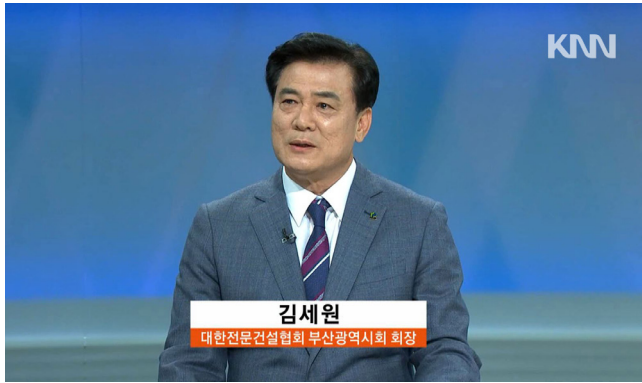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부산광역시, 구·군 담당자, 안전분야 기업 omb즈만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같이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시회는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하는 등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록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하는 등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협회 소식

## 회장동정



### KNN 모닝와이드 인물포커스 인터뷰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5월 8일 방송된 「KNN 모닝와이드 인물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개 및 주요 업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업계 상황, 협회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협회의 의견 등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협회의 대안을 제시했다.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은 5월 31일 김영운 중앙회장, 이서길 부회장(광주시회장), 오종순 부회장(전남도회장)과 함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전문건설업계에 적극 지원해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 KOSCA 전문건설 CEO 혁신 성장 포럼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은 5월 14일 협회 중앙회가 주최하는 「전문건설 CEO 혁신 성장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건설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 성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 건설,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 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희망 건설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원소식



**2019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6월 20일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9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경남 마산시가 마산9경으로 선정한 저도 용두산 비치로드길에서 열린 이날 산행에는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행은 저도연륙교에서 출발해 전망대를 거쳐 제3바닷길로 이동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며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경



(주)금호지질  
허성하

**2019 건설의 날 회원사 수상 안내**

6월 20일 개최된 「2019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건설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부산시회 제11대 부회장인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경 대표이사 와 제11대 운영위원인 (주)금호지질 허성하 대표이사가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활동

**산불피해 돕기 성금 지원**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민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금 3백만원을 KOSCA 중앙회를 통해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며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했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수주지원

### 01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적격심사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안내

#### 산림보호법 개정('18. 6. 28.)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수행한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도 실적인정이 타당

부산시회는 4월 15일 부산지역 39개 산림복지 관련 주요 발주기관에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적격심사 시 산림보호법('18. 6. 28.) 개정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수행한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도 실적인정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안내하며,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적격심사 시 법 개정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실적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했다.**

그동안,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써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수행하였으나,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18. 6. 28.)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 또는 1·2종)으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에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산림복지 관련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를('19. 3. 27.) 추진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 과정에서 '18. 6. 28.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수행한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실적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시회는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적격심사 시 산림보호법('18. 6. 28.) 개정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수행한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도 실적인정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여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사업소 등에 적격심사 시 법 개정 이전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실적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 것이다.



### 02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역준수 추진

최근 조달청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수·보강공사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화장실 개보수공사, 교사 개보수공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보수·보강공사의 경우 신기술·특허(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가 포함된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만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있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5월 7일 조달청(중앙회 경우)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관련 유권해석을 안내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03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 준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로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근절을 위하여 4월 24일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구·군청, 공사·공단, 사업소 등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적용이 어려울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5월 13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공사공단, 교육청 등 부산지역 80여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마련한 「부산광역시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 등 각종 갑질 횡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2019년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5월 29일에는 발주기관 감사 부서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어려워 사업부서에서 사전컨설팅 의뢰가 있을 경우 설계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04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5월 13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추천했으며, 시공기술력이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05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 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여부 확인 협조**

**건축물 철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에게...**

부산시회는 6월 10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의 접수·검토 시 건축물 철거를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건설업 무등록 시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 전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건축물의 철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

자 등 일반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어, 적법하게 전문건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건설업 무등록자의 난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회는 상기 내용을 관련기관에 추진한 것이다.

06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시·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6월 12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아파트, 공인중개사 협회,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 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시장에서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 근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07

**시설물유지관리업 편향 발주 및 전문공사 통합발주 지양 추진**

**부산시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

부산시회는 6월 18일 부산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를 통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편향 발주”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각 학교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공종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공사를 통합해 발주하면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전문건설

#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공사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공사, 급식실 개보수공사, 교실 개보수공사 등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이 수행 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편향 발주를 하고 있다며, 동 공사에 실내건축공사업 체도 입찰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08

## 소규모 복합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협조

특허·신기술 반영, 단순한 2종 이상의 전문공사 복합,  
기존의 발주관행 등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편향 발주

부산시회는 7월 2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편향 발주를 지양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국도교통부에서는 발주자에게 공사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시공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도급 단계 축소(2단계→1단계)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4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2015. 11. 2.)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으로써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나머지 전문공종은 부대공사로 보아 주된 전문공종의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아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설물의 보수·보강·개량공사를 특허·신기술 반영, 단순한 2종 이상의 전문공사 복합,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고 있다.

부산시회는 설계에 반영된 특허·신기술은 하나의 특허된 시공방법으로써 건설공사 낙찰자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므로 시공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각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있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도개선

01

## 불법 외국인 고용에 따른 정부 합동단속 대책 마련 건의

### 적정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확대 건의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합동단속(2019년 4월부터)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연합 간의 소속 노조원(외국인근로자 포함)을 우선 채용토록 강요하는 불법노조행위로 인해 부산사회 회원사에서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회는 4월 8일 국내 채용 가능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배정 인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으며, 불법 외국인 고용 정부 합동단속에 따른 협회 회원사들의 처벌이 유예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협회 중앙회에 건의했다.

02

## 기업 규제애로 개선 건의

###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금지 건의

부산시회는 4월 19일 부산광역시에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와 관련하여 기업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발주 가능하며,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군을 제외한 자치구 소재 업체만 또는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단위의 경우 자치구와 군이 인접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교통도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해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업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업종 간 업역분쟁을 야기시키고, 위장전입, 폐이퍼컴퍼니 등 건설부조리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공사의 경우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 소재업체 또는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 업체만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도 서지역인 경우에만 구군을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5월 3일 정무서울청사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제160회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안건을 재차 건 의하였으며,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군 지 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당초 도입취지였으나 이는 15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이미 충족되었고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저촉되는 점을 행정안전 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 을 받아냈다.

### 03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선 건의

#### 현행 면세기준 건설업과는 맞지 않아...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종전 종업원분 사업소세)」은 개정 ('15. 12. 31.) 이전 종업원 수를 기준(50명 이하)으로 면세하였으나, 50명 이하 기업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본집약 적 기업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 간 과 세 불합리의 문제를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월급여총액으로 개정하였다.

2015년까지 면세 규정	사업장의 <b>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b> 경우
2016년부터 개정된 면세 규정	최근 1년간 사업장 <b>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50명 × 270만원) 이하인</b> 경우

그러나 현재 면세기준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산정방법 에서 270만원은 법 개정 당시 근로실태조사(2014년)에 따른 월평균 종업원의 급여를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서 현재 월평균 종업원의 급여 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5. 12. 31.)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른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014년에 2,983,800원, 2015년에 3,157,765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270만 원)과 많은 차이가 있어 법 개정 당시에도 건설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 실과 맞지 않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에 시회는 6월 10일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인 월평균종업원 급 여를 270만원으로 정하여 놓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 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월평균종업원 급여를 토대로 면세기준(2018년 6월 발표 기준 300만원)이 산정되어야 하 며, 특히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 부담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집약산업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보수(2019년 고시 기준 건설업 월평균보 수 약 390만원)를 면세기준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하였다.

한편 부산시회는 회원사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및 납부 유의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매월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의 2부터 제84조의 7까지
  - 동 법 시행령 제85조의 2부터 제85조의 5까지
  -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 4까지

#### ■ 면세대상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 면세대상 판단 예시(매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2019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 ① 2019년 1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 계산
  - ② ①에서 구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인지 확인 → 이하일 경우 면세,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 ③ ①, ②를 통해 과세대상일 경우, 실제 납부할 금액은 2019년 1월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납부

#### ■ 가산세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무신고) 세액 × 1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한 세액 × 25/100,000 × 경과일수

# 신기술 소개

## 2019년 상반기 신기술 지정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56 (2019. 1. 16.)	삼부도건(주), (주)홍지, (주)도화엔지니어링, (주)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터널 구조물의 풍도슬래브 하면에 친환경 무기질계 내화재를 피복한 프리캐스트 내화풍도 슬래브(FPCS) 및 내화격벽(FPP, 횡류식 풍도 내부에 급기와 배기구분) 제작과 스윙베드 가설 장비를 이용한 시공기술
857 (2019. 1. 21.)	(주)동성엔지니어링, (주)창광이앤씨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이용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방법	와이어로프에 압축 퀴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연결하여 만든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
858 (2019. 1. 25.)	비코리아이앤씨(주), (주)건일, (주)비테크, (주)동성엔지니어링	주입공별로 주입압력, 주입량 등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를 이용한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기술	주입펌프 내부에 최대 6개의 실린더를 장착하고 최대 3개의 주입공에 동시 주입이 가능한 다중 동시주입펌프를 이용하여 개별 주입공별로 주입압력과 주입량 설정으로 주입 효율을 개선하고 시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공 효율성을 향상시킨 컴팩션 그라우팅 시공기술
859 (2019. 2. 1.)	GS건설(주), 현대건설(주), (주)선구엔지니어링, (주)대산시빌테크날러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포스코건설, 동아엔지(주)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를 개착과 동시에 조립 방식으로 축조하는 저심도 지하 구조물 탐다운 시공기술	저심도에 프리캐스트 벽체 상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흠막이용 강관이 부착된 벽체 시공으로 짧은 벽체로도 상단 흠막이 역할 및 연속벽체를 형성하고 프리캐스트 벽체에 프리캐스트 상부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함으로써 이들 프리캐스트 벽체 및 슬래브가 흠막이 가시 설 역할을 하면서 개착되고 조립된 구조물이 영구 지하 구조물로 축조되는 탐다운 방식의 개착 미 지하구조물 시공기술
860 (2019. 2. 27.)	(주)한진중공업, GS건설(주), 금호산업(주), (주)KH 하우징솔루션스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의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	충고절감 효과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
861 (2019. 3. 14.)	(주)동성엔지니어링, 해동브릿지(주),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다발로 이용한 듀얼텐던시스템 적용 단부 절취형 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오뚜기 거더 공법)	2,160MPa 이상의 고강도 비부착 강연선을 쉬스관 없이 다발로 사용한 듀얼텐던시스템을 적용하고, 교량거더 단부를 절취하여 받침점을 상향시켜 교량 가설 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 거더 공법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62 (2019. 3. 15.)	(주)일신이앤씨, (주)경동엔지니어링, (주)경화엔지니어링, (주)내경엔지니어링, (주)대명건설	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측 구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일체 형으로 제작된 선배수시스템 공법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맞게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 부채꼴 모양으로 작은 수심비에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 이 높고,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풍선 부채꼴 모양으로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느려 세굴력이 감소되고 유량이 최대가 되는 원추발룬난형 관거에 집 수능력을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일체화된 측구관거를 모듈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
863 (2019. 3. 28.)	한국내진시스템(주)	구조용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층 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 및 시트에 난연성 접착제를 부착한 콘 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구조용 유리섬유(Glass fiber)를 골형화 성형하고 그 위에 탄소섬유(Carbon fiber) 원사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과 시트에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864 (2019. 5. 1.)	(주)특수건설, (주)피에이티씨, 한국수자원공사	노후 소구경 상수도관로에 관 파쇄 기술을 적용한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	노후된 15mm~80mm 소구경 관로를 대상으로 상수 도관을 굴착하지 않고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장치 에 연결하여 기존관(PE, PVC, STS)을 파쇄하는 동시 에 파쇄헤드 후미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하는 비굴착 상수도 관로 교체 공법
865 (2019. 5. 17.)	우림매스틱공업(주), 극동건설(주), (주)세운건설, 남광토건(주)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 방수 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 조된 섬유 시트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 조성물과 스티 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를 활용하여 태양열 반 사방사 기능과 방수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866 (2019. 5. 17.)	GS건설(주)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소모량 절감(20% 이상)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 을 저감하는 기술이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 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도의 RO 농축수를 압력지 연삼투(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 출(농축수 30% 이상 저감)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 현황 ⇒ 지정 현황(건설신기술)

황홀한 물줄기의 마법

#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부산의 해수욕장은 저마다 특색이 있다. 그중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은 탁 트인 바다, 잔잔한 파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풍경이 매력이다. 부산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해가 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특히 여름이면 음악에 맞춰 물길 이리저리 춤추는 '꿈의 낙조분수'가 열려 야간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글 송정은 사진제공 사하구청, 한국관광공사







다대포 야경(이정일, 사하구청 사하관광사진공모전 가작)



다대포의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아미산전망대

### 다대포 여행의 하이라이트, 꿈의 낙조분수

일몰 뒤 하늘이 어두워진 다대포해수욕장의 하이라이트는 다대포해변공원에 있는 ‘꿈의 낙조분수쇼’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분수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졌다.

오후 8시가 되면 웅장한 음악과 함께 낙조분수대가 물줄기를 뿜어내며 공연을 시작한다. 5월부터 8월까지의 오후 8시에 공연이 있고, 주말엔 9시 공연이 한 차례 더 있다. 공연은 30분 정도 이어진다. 4·9·10월엔 모든 공연 시간이 30분 당겨진다. 낙조분수는 수십 개의 물줄기가 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최고 물 높이가 55m나 된다.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돼 있다.

물줄기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화려하게 역동하기 시작하면 분수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음악분수공연은 화려한 LED 조명과 함께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2009년부터 꿈의 낙조분수대가 운영됐는데, 10년 동안 물줄기의 안무와 음악 공연이 계속해서 다듬어졌다. 음악은 가요, 팝, 클래식 등 대여섯 곡으로 구성하며 매일 선곡이 달라진다. 지난해엔 200만 명 넘는 관람객이 분수대 공연을 보았다.

공연 외에도 5월부터 9월까지 아이들이 분수에 뛰어 들 수 있는 물놀이 체험 시간도 있다. 오전 11시와 오후 2~5시 매시간 정각 20분간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 음악분수공연 첫 회가 끝난 뒤 10분간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광활한 일몰이 아름다운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점이 강점이 됐다. 난개발을 피한 덕에 광활한 백사장이 보존됐고, 해안에서 300m 거리의 바다까지도 수심이 1.5m 안팎이어서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해수욕장 옆에는 소나무 숲 전체를 아우르는 해변공원이 조성돼 자연 친화적이다. 걷기 좋은 계절의 저녁에 여유로움을 느끼기 위한, 감상용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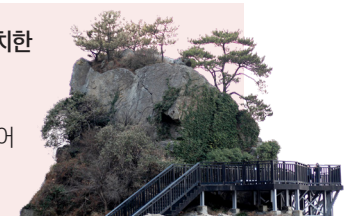
다대포해수욕장은 늦은 오후에 찾으면 더 좋다. 부산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일몰을 보려면 다대포해수욕장 근처 아미산전망대를 추천한다. 아미산전망대는 다대포 바다로 이어지는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에 최고의 장소다. 아미산전망대에서면 다대포에서 가덕도까지 낙동강하구의 광활한 갯벌과 모래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아미산 전망대로 이어진 생태탐방로(노을마루길)를 따라 걸어갈 수도 있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주차장이 있어 자가용 이용도 편리하다.

일몰에 가까워질수록 낙동강 하구는 주홍빛으로 물든다. 낙조가 떨어진 잔잔한 물결이 은을 녹인 액체처럼 빛난다.



**다대포 백사장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물운대 낙조전망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아미산 전망대와 더불어 부산에서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Transamerica Pyramid)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고층 건물이다. 빌딩이 완공된 1974년에는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건축된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세를 알렸다.

높이 256m, 48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어느 빌딩과는 달리 건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끝이 뾰족해지는 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됐다. 윗부분 양옆에는 수직 구조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두 개의 날개가 붙어있다. 피라미드 디자인의 장점은 가늘고 긴 형태 덕분에 주변 건물에 그늘을 덜 드리우며, 거리에 많은 빛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총 3,678개의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수평 방향이 아니라 공중을 향해 반사돼 시내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쉽게 눈에 띈다. 각 층마다 금속, 석영 골재를 사용하여 미세한 진동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다.

오늘날 트랜스아메리카 피라미드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며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완공 당시에는 많은 조롱과 항의를 받았던 건축물이다. 특이한 형태 때문에 도시의 본래 분위기가 해쳐질 수 있으며, 심지어 도시의 구조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대중의 마음은 차츰 너그러워지기 시작해 마침내 오늘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다.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전망대에 오르면 시내는 물론 골든게이트 브릿지, 베이브릿지 등의 다리와 앨커투라즈 섬 등을 조망할 수 있다.

글 송정은

STORY  
01

현명한 변호사



남자가 변호사에게 상담한다.

**남자** 이웃집 사람이 50만원을 빌려 가서는 안 빌렸다고 우기면서 갚지를 않아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차용증을 쓰셨나요?

**남자** 아니요.

**변호사** 그럼 500만원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내세요.

**남자** 빌려 간 돈은 50만원인데요.

**변호사** 분명히 '50만원밖에 안 빌렸는데 뭘 소리냐'라고 답장을 할 테니까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STORY  
02

엄마의 포기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콜드크림을 골고루 바르고 있었다.

여섯 살 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아들**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응!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란다!

잠시 후 여자가 화장지로 콜드크림을 닦아 내자 아들이 말했다.

**아들** 왜 닦아내? 엄마, 포기하는 거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삼인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 태 원**

“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사무실 데스크 옆에 ‘지혜로운 이의 삶’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경영인이라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붓다의 가르침을 마음에 소중히 품고 있는 이태원(50) 삼지건설 주식회사 대표. 젊다! 여느 건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연매출 2,000억 원, 정규직만 110명에 이르는 ‘골리앗’ 전문건설사 삼지를 이끄는 그의 첫 말은 뜻밖이었다. “오너도 설립자도 아닌 제가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992년 설립된 삼지건설에 3년 후 입사해, 2009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설립자이



자 오너인 이소영 회장이 외삼촌이다. 그렇다면 삼지는 가족 중심의 2세 경영체제일까? 천만에. 이 대표는 오로지 탐과 실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올라왔다고 자부한다.

그는 원래 정치꾼이었다. 명문 고려대 정외과를 다니며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불살랐고, 감방도 들락날락했다. 졸업 후에는 진보정당 추진위 학생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이 회장에게 간청했고, ‘덜컾’ 삼지에 입사하게 됐다.

우째, 이런 일이! “문과를 나온 제가 험하기로 이름난 건축골조 분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짜퉁’ 일본어가 판치는 용어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지내다 보니 주임-대리-과장을 거쳐 대표에까지 올라 장장 25년을 몸담고 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혹한기’였던 IMF 때의 기억은 지금도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 당시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피 말리는 사투



였다. “지역은행과 대형건설사가 속절없이 문을 닫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만기 어음이 입금됐는지 가슴 졸이며 오후 5시, 밤 8시, 그리고 날을 새며 지켜봐야 했죠.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수호천사’들이 나타났다. 회장을 믿고 거래했던 지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직원들까지 나섰다. “상여금과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했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장롱에 넣어둔 예금통장까지 들고 와 내놓았습니다. 감동 그 자체더군요.”

이 대표도 당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아니, 그 덕분에 삼지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익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업체들이 많이 몰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 건물 대신 초고층건물과 아울렛 매장 같은 상업 건물 골조 공사를 강력히 건의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회장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과는 대박! 현재 삼지는 이 부문 대한민국 1위 업체다. 5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연매출이 20배나 쾡쾡 뛰었다.

“초고층건물 공사를 맡으려면 대규모 투자와 고난도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 등 자본과 시간

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20년 전 서울지사를 설립해 초기비용만 최소 100억 원 이상 투입됐습니다. IMF 때 상당수 지역 업체들이 지사를 철수시켰지만 곳곳이 견뎌냈더니, 행운의 여신이 마침내 미소를 짓더군요.”

현재 연매출의 80% 이상이 타지역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시장다변화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비롯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골조공사를 모두 삼지가 해냈다니 대단한 실력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삼지가 전문건설업 선두주자군으로 떠오르게 된 핵심 요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었다. 회장이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며 결단을 내린 공적기금체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다시 말해 평직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 회장은 주저 없이 지분 49%를 공적기금에 넣었다. “콘도 회원권을 매입해 휴가시설로 운영하고, 학자금과 주택자금, 상호 비용을 지원하죠. 단, 임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직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수밖에요.” 현재 부산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을 통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스템을 갖춘 곳이 고작 15군데에 불과하다니 삼지의 앞선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문건설업이 나아가야 갈 방향을 묻자 이 대표는 거침없이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게 바로 사회악이란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되, 성과의 과실을 독식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회장님께서 결연하게 밝히셨듯이 삼지건설은 혈연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없을 겁니다.”

“외형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한 그는 “수익이 나지 않는 외형 매출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경영은 지양돼야 한다는 거다. “기술력이 상위 1%에 들면 자연히 수요가 몰려들게 마련이니까요.” 전문건설업 30년 역사를 뛰어넘어 2세대를 활짝 열어가는 이 대표의 충고가 신선하다. 이야말로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려는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죽비’가 아닐까.

글·최원열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꿈을 실현한 건담인

광민건업(주)  
대표이사 **최형선**

“  
신뢰와 희망은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



첫인상이 수더분하다.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일까.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필자를 안내하는 최형선(58) 광민건업(주) 대표. 자수성가한 여느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그도 가시밭길을 어렵사리 헤쳐 나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뒤로는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온 의지의 건담인이다.

전남 담양 출신인 그는 먹고살기도 힘든 7남매의 대가족에서 탈출해 무턱대고 상경했다. 직물, 프레스 업체 등을 전전하며 근근이 입에 풀칠을 하던 중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이 뒤숭숭하자 그는 누나가 있는 부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부산은 신발산업의 메카였다. 신발 공장에 취

직했지만 그는 절망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노임 페이기는 예사이고, 다니던 업체가 부도나기라도 하면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도 없었죠. 비전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 창호제작업체로 옮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정신’을 줄줄 꿰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를 외친 최 대표는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5개년 플랜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천에 옮겼다. “다니던 업체 사장에게 그만두기 2년 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작은 천막을 얻어 영세업자로 나섰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독기를 품고 혼자 발을 디딘 거였죠.”

현실은 참으로 가혹했다. 사람 쓸 여력이 아예 없었기에 사업자등록만 달랑 해놓고는 집사람과 함께 현장 일당꾼으로 일하러 나갔다.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두 아이를 놀이방에 맡긴 채 일하러 나가야 하는 그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할까. “다행히 집사람 친구가 오후에 아이들을 맡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 분을 저희 회사 경리직원으로 모셔왔어요.”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굳은 각오를 다졌다. 점심 끼니를 건너뛰기가 일쑤였고, 주린 배를 끌어안으며 하루 17시간을 뛰고 또 뛰었다. 오직 '건설 면허와 어엿한 회사, 그리고 사무실'이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늘은 일을 시키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의지를 시험하며 시련과 고통을 준다고 맹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시련을 참고 견뎌내자 마침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딱 물고 늘어졌다. 바로 평생의 멘토를 만난 것이다. (주)동부토건의 손창욱 회장이 그다. 최 대표의 사업관은 손 회장을 빼놓았다. 그를 닮기 위해 노력했으니 당연하다.

손 회장은 부산지역에서 이름난 건설인이다. '베스티움'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최고의 주거공간'이란 뜻을 지닌 이 브랜드가 손 회장의 작품이다. 손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시련을 맞았지만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던 협력업체 도움으로 이겨냈다. 그 비결은 신뢰였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한다. "신뢰란 입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돌아오는 보상이다." "협력업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다."

최 대표는 한마디로 손 회장의 믿음을 얻었기에 24년간 꾸준히 거래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거다. "지금까지 것처럼 의리 있는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요."

손 회장과 최 대표, 어쩌면 손 회장이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은 학연과 혈연, 지연 하나 없는 호남인이란 공통점을 지녔고, 똑심 하나로 버텼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제 최 대표는 성공한 건삶인으로 우뚝 섰다. 그가 설립한 법인만 4개나 된다. 광민건설 외에 창원에 광진금속, 밀양의 태양홀딩도어, 그리고 통영의 보명개발(건물임대업)이 그들이다. 연매출이 300억 원에 이른다.

"비상시 직원들을 위한 법인 자산이 꽤 튼실해요. 비상장 주식(1만주)을 평가했더니 주당 16만원이나 나왔습니다. 흐뭇하더군요."

그에게 성공 비결이란 따로 없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는 요즘도 평택, 남원, 안동, 청주,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느라 분주하다.

최 대표는 재차 강조한다. '안 된다. 못 한다'란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오더가 내려오면 일단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겼던 일도 되더라고요. 내 능력이 못 미치면 나를 신뢰하는 주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고 정주영 왕회장의 '이봐, 해봤어?'란 명언을 소개했다. 불굴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최 대표의 말이 크게 울려온다.

글·최원열



## 01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1980호, 2019. 3. 4.

1.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300억 미만)
  - 근로시간단축 조기 도입 여부(100억 미만)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만점기준 강화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이고,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 시 만점
3. 시행일자 : 2019. 3. 5.부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1980호, 2019. 3. 4.

1. 신인도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 전문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 제외
2. 시행일자 : 2019. 3. 5.부터

####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토목환경과-752호, 2019. 3. 5.

1.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제외대상 추가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달청의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2.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및 심사 배점 조정 등
3. 공정거래 심사 시 감점 배점 확대(-0.2점 → -0.6점)
4. 시행일자 : 2019. 3. 5.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 02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건설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 및 공공발주기관에 시달(‘19. 3. 31.)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법규 준수**

- 공사현장 사업담당자 및 계약 상대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 현장여건, 공정 진행 고려 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공사의 일시정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6조 제1항(계약기간의 연장)

**3. 미세먼지로 인한 작업곤란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사·통첩 →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617호(2019. 4. 4.)

**1.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신설(제18조의 2)**

-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이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에게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 경력 확인 접수(처리)대장 기록 의무화

**2. 시행일자** : 2019. 4. 4.부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2019. 4. 10.)

**1.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시 징구 서류 확대(제6조 제2항)**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의무화
  - 「'05. 7. 1.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 발주청 근무경력 신고 시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확인서류 추가

**2. 시행일자** : 2019. 4. 10.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훈령 제1864호(2019. 4. 12.)

##### 1. 기초금액 공개일 조정(제9조)

- 입찰서 제출개시일 1주일 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 단,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이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 2. 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제19조의 3)

-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 3. 시행일자 : 2019. 4. 15.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3168호(2019. 4. 15.)

##### 1. 건설업 면허 변경 시 지역소재 기간산정 방법 신설(제7조 제4항 제4호)

- 건설업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이내 말소 전과 동일한 업종,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으로 등록 시 변경등록 전 지역소재 기간 합산

##### 2. 일자리창출 관련 신인도 평가 배점 조정(별표3)

- (기존) +2.5점 → (개정) +3점

##### 3. 시행일자 : 2019. 4. 15.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참·고시·통첩 →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호(2019. 5. 7.)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제17조 제1항)
  - 계약금액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제2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 반영 근거 명시(제14조 제1항)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안전보건법)

-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안전사고 우려'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가설구조물' 포함 (제21조 제1항)

2. 시행일자 : 2019. 5. 7.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등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예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2019. 6. 1.

#### 1.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등

- 공기연장 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발주기관이 부담

2. 시행일자 : 2019. 6. 1.부터

### 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5호, 2019. 6. 1.

#### 1.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제외

#### 2.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 미만 시 감점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4% 미만 시 감점

3. 시행일자 : 2019. 6. 1.부터

###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 2019. 6. 1.

#### 1. 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 개선 및 주휴수당 계상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	자재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사급자재 단가 적용
제수당(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제수당(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2. 시행일자 : 2019. 6. 1.부터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2호, 2019. 6. 1.

### 1.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낙찰률 2~3%p 상향)

개정 전	개정 후
상위투찰금액의 40%, 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 2. 시행일자 : 2019. 6.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877호(2019. 6. 18.)

### 1.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완화(별표2)

- 자본금 기준을 약 70% 수준으로 완화
  - 예) 실내건축공사업 등 자본금 2억원 → 1.5억원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기준
  - 자본금의 20%~50% → 25%~60%
- 시행일('19. 6. 19.) 이전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한 자도 적용. 단, '18. 12. 31. 이전 건설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18. 12. 31.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 2.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기준 세분화 등(제33조 제2항)

- 불법하도급, 산재사고 공표 등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별표3의 2)
  -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약 280개 기관
-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4~16%
-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 받은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8~30%

### 3.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의무 위반 시 제재(별표7 제2항 가목 제23호)

- 과태료 처분 : 1차 100만원, 2·3차 150만원

### 4.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시 벌점부과(제28조)

- 수급인이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하수급인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별표3)
- 벌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제79조 및 제88조의 2)

-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5점 초과 시 과태료
- ※ 부과된 벌점은 3년 경과 시 소멸

#### 5.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별표6, 7)

- 그 위반 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8~30%(별표6 제2호 나목 제9호)
- 그 위반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과태료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별표7 제2호 카목)

#### 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마련(제64조의 4, 별표6, 7)

#### 7. 시행일자 : 2019. 6. 19.부터

- ※ 다만, 제26조의 3(공공기관 범위), 제34조의 3(하도급 계약자로 공개 대상 공공기관), 별표7 제2호 사목(공동수급체 변경신고) 및 하목(하도급 계약자로 미고지 등)의 개정 규정은 '19. 7. 1.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627호(2019. 6. 19.)

#### 1.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게재(제27조)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 2.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제27조의 5)

-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공개

#### 3.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예외기준 마련(제28조 제5항)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의 공사인 경우 의무사용 제외

#### 4.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 기준 신설(제34조의 4, 별지 제26호의 3)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 '19. 6. 19. 이후 최초로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등(제34조의 5, 별지 제26호의 4)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6. 시행일자 : 2019. 6. 19.부터

- ※ 다만,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 제27조의 5 및 별지 제22호의 6 서식 개정규정은 '19. 7. 1.부터 시행
- ※ 고용평가 시공능력평가 가산 관련 제32조의 2, 별표, 별표2, 별지 제25호의 2 서식의 개정규정은 '19. 12. 19.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8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에서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입찰가격 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신인도 평가 시 일자리창출기업 가점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 2019. 6. 13.

#### 1.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별표6)

개정 전	개정 후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 미만 시 감점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4% 미만 시 감점

#### 2. 입찰가격 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1부터 별지#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제외

#### 3. 신인도평가 중 일자리창출기업 가점 부과 관련 세분화(별지#2 및 별지#4)

- 전문건설공사는 급여액 증가로 평가하되,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 부여 시 홈택스 외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신고한 자료로 인정

#### 4. 공동수급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 인정 기준 완화(별표1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 시 건설업종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전 지역소재기간 합산

#### 5. 시행일자 : 2019. 6. 15.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단, [별지#1]부터 [별지#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6] 개정규정은 2019. 8.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

####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 2.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 3. 재검토키한 재설정(3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건설산업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기관을 지정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7호(2019. 6. 19.)

1. 위탁기관 : 건설산업정보센터

2.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의 2호
법 제29조의 3에 따른 하도급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의 3호

\* 벌점 부과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은 건설업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건설산업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 배포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에 따른 법 시행('19. 6. 19.) 이후 모든 공공공사(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대금e바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19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동 운영기준에는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및 운영기준과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부산사회는 시행초기 건설현장에 혼란을 방지하고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12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고시 제정 시행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제3조의 4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을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의 개정은 하수급인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 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당특약 고시 제정 주요 내용

#### 1.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4)

• 부당특약 고시 주요 내용(5가지 유형, 총 16가지 세부유형)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 16개)

#### 2. 시행일자 : 2019. 6. 19.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 건설산업관계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고시 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가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2019. 6. 25.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공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2. 시행일자 : 2019. 6. 25.부터



중요!

14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1.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제75조의 2 신설)
  -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시행 등
2.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 제3항)
3.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4.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제93조의 2 신설)
  -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5.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제110조 제1항)
  - (기존) 종합 30억, 전문 3억 이상
  - (개정) 종합 10억, 전문 1억 이상
6.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 제2항)
  - ※ 이의신청 관련 개정사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
7. 시행일자 : 2019. 6. 25.부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1.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제24조 제1호)
  - (기존) 7억원 미만
  - (개정) 10억원 미만
2.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금지(제76조 제4항)
3. 시행일자 : 2019. 6. 25.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 1. 신기술 사용협약 요건 규정(제36조의 2)

-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 시공장비 소유(또는 임대)한 자
- 해당 신기술 전수(傳受)한 자

#### 2. 건설기술용역업자 발주청 실정보고 조치 기한 규정(제59조의 3)

- 건설업자가 개선사항 검토 요청 시 건설기술용역업자 검토 및 발주청 보고(14일 이내)

#### 3.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대상 확대(제87조)

- (현행)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개정) 모든 건설공사

####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관련 정보 규정(제101조의 4)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건설공사현장 신고 사실 조사결과 등

#### 5. 시행일자 : 2019. 7.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2019년도 경영상태 평가 및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정

우리 협회에서는 7월 1일 정부·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2018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정하고 2018년도 공사실적 확인서 및 2019년도 경영상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2018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2018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분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부채비율	71.93%	75.38%	75.54%	58.14%	60.77%	72.10%	80.59%
유동비율	177.57%	173.91%	145.61%	280.98%	179.74%	135.90%	153.74%

구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부채비율	92.67%	70.82%	65.76%	67.86%	43.46%	54.31%	57.12%
유동비율	113.55%	184.87%	189.11%	184.17%	242.85%	228.49%	189.13%

구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부채비율	90.01%	75.82%	131.94%	113.19%	236.80%	146.78%	85.94%
유동비율	118.13%	123.58%	138.98%	129.76%	78.48%	135.39%	115.5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0.06%	-	0.03%	-

※ 적용기간 : 2019. 7. 1.부터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87%로 전년(88.81%) 대비 1.81%포인트 낮아졌으며, 유동비율은 평균 162.83%로 전년(141.46%) 대비 21.37%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철도·궤도가 43.46%로 가장 낮았고 삭도설치(236.80%)와 준설(14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부채비율은 17개 업종이 낮아졌으며 준설(△33.60%)과 철강재설치(△27.72%) 업종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삭도설치(111.94%), 강구조물(19.95%), 지붕판금·건축물조립(2.39%), 금속구조물·창호·온실(0.26%) 5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 유동비율은 석공이 280.98%로 가장 높고 삭도설치(78.48%)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이 113.55%로 낮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동비율은 19개 업종이 높아졌으며 철도·궤도(69.83%), 도장(60.82%), 수중(46.84%), 습식·방수(37.33%)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링·그라우팅(△4.06%), 조경식재(△2.54%) 2개 업종만 유동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02

###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 8. 1.부터** 효력발생으로 관련 제증명서(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가 발급되고,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가 시작된다.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하고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공시한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8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이다.

중요!

## 03

###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와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내용

- 실제로 대금체불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까지 법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조사가 종결된 단계에서는 대금체불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시정명령만 반복)가 빈번하게 발생
- 하도급대금 등 대금체불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금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는 누적관리 필요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대금체불 사실 관계 확인 시 그 위반행위를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법 위반자에게 처분이력 관리를 실시하고,
-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적용

▶ **결론** :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한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법 위반행위로서 별도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이 없더라도 처분이력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최근 2년 이내 처분이력관리에 하도급대금 체불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

※ 하도급대금체불, 미지급, 4대보험료 미반영, 불공정행위, 부당특약,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등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 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 협회로부터 동 제도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었기에 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의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자는 신기술 공중 시공에 참여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 2016. 1. 12. 기술사용협약제도 도입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3호)」 → 2016. 11. 9. 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2(신기술사용협약)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법률로 상향(2019. 7. 1. 시행)

### 2. 협약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 해당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 3. 협약기간 :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

###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 테라타워2 B동 1016호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안내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는 작업 수칙 준수 및 철저한 장비운영상태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회원사에 안내하고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철저 및 예방활동 강화 협조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또한 화재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다하도록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철저 및 예방활동 지도·점검 강화 문서를 시달하였다. 이에 시회는 소화기구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인화물질 보관·관리 등 철저한 건설현장 화재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을 회원사에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에 합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이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발생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지난 2008년 2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공사대금 지명채권양도로 규정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선고 2007다54108)을 내렸기 때문이며, 발주자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에서는 회원사가 참여 중인 하도급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공증기관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대금 압류 또는 가압류 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09

###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현장 대응요령(리플릿) 안내

타워크레인은 고층구조물 등의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건설기계로 주로 종합건설업체와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현장 전문건설업체가 골조공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운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월레비 등의 부당금품을 빈번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사회는 부당행위 처벌규정 및 부당요구 대응요령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 현장 대응요령(리플릿)」을 회원사에 안내하여 부당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0

## 재외동포(F-4) 건설현장 취업 가능 안내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설업 고용허가(E-9, H-2) 외국인력 쿼터 확대, 포괄적 고용제한 해제 및 취업교육(H-2)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단순노무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활용을 위해 적극 건의한 결과, 최근 법무부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건설현장 취업 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합법적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법무부 해석 기준을 통해 해당 분야에 합법적 취업이 명확해진 바, 시회는 회원사에게 외국인력을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인력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금번 법무부 해석기준을 안내하였다.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 22.)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 (예시) 철근공(78210), 콘크리트공·타설원(78223), 거푸집 설치원·준비원(78243)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님
-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1항 및 제3항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법무부 고시 제2018-70호(2018. 3. 26.)】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동 법무부 해석기준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 설치원·준비원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함  
- 단,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업무를 명시하는 등 근거자료 남겨두어 차후 불법외국인 취업 관련 단속 시 대비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 1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안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기본 질서 확립 및 공신력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목표로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사회는 자격증 불법대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일제단속 기간

- 단속 기간 : 2019. 5. 20.~7. 30.(2개월간)

• 조사대상자 선정

- 고용보험정보, 기술인등록정보 등 자격종목별 취득자 행정정보 참고하여 대여 의심군 추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주소와 사업장 주소지의 광역시가 다를 경우
-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극히 낮은 경우
- 관련 협회 회비 체납 여부 등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내용

위반사항	처벌내용	관련근거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li> <li>•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li> </ul>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등록말소</li> </ul>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제1호, 제98조 제2항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2

### 굴착공사 신고 제도 안내

####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파손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굴착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3에 의거 굴착공사 전에 미리 굴착공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배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등 토지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 착공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도로, 아파트 단지, 사유지 내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수작업 제외)
- **신고처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전화 : 1644-0001
  - 인터넷 : www.eocs.or.kr
  - 모바일 : m.eocs.or.kr
- **신고절차**
  -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조치(한국가스안전공사)
    - ▶ 굴착개시통보(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입회요청(굴착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사개시
- **미신고 시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안내

정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사용 의무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3. 19.)」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 11.)」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1,300여 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에 있다.

이에 시회는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정부지침과 시스템비계 사용 촉진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금융지원사업, 시스템비계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주는 건설업 클린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현장 불시감독 등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1. 고용노동부 현장 불시감독

- **기간** : 2019. 5. 13.(월)~5. 31.(금)
- **대상** : 전국 1,300개 건설현장
  - 근린생활시설·공장 신축, 철골·거푸집작업 등 추락재해 우려 현장
  - 단,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제외
- **점검내용**
  -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점검
  -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 **점검결과**
  - 안전관리 불량 시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노동자 즉시 과태료 부과

## 2.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촉진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금융지원 안내

- (1) 보증수수료 인하(시행일 : 2019. 5. 1.)
  -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금액 20억원 이하의 민간 발주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 수수료 10% 할인
- (2) 공제료 인하(시행일 : 2019. 5. 1.)
  -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금액 20억원 이하의 민간 발주공사에 대하여 근로자재해공제료 특별할인율 10% 반영
- (3) 담보용자 지원(시행일 : 2019. 5. 1.)
  - 일체형 작업발판을 구매하여 보급하는 조합원을 위한 담보용자 실시
- (4)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시행일 : 2019. 8. 1.)
  - 일체형작업발판의 공급단가 인하를 위해 가설재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상품 개발예정
- (5) 문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 부산지점(☎051-647-4240), 부산북지점(☎051-506-4940)

## 3. 건설업 클린지원 사업

- (1)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임차 및 구입 비용 일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
-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설사업주
  -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3) 지원조건 : 공사규모별 안전시설 설치비용 차등 지원
  - 3억원 미만 65%, 3억~10억원 미만 : 60%, 10억~20억원 미만 : 50%
- (4) 지원한도 :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동일 사업장 연 2회 지원횟수 제한
- (5) 지원문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건설안전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건설)
  - 안전보건공단 본부 건설안전실 : ☎052-703-0778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14

##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연성 확보 대응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 7. 1.부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 1. 1.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52시간 근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도 두 차례 유예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법정 공휴일도 민간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는 계속될 예정에 있다.

사회는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시행일정,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1. 근로시간 단축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 68h → 52h

300인 이상	299인~50인	49인~5인
'18. 7. 1.	'20. 1. 1.	'21. 7. 1.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근로시간 미준수 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 법정공휴일

- 민간 확대(국경일, 명절 등)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300인 이상	299인~50인	49인~5인
'20. 1. 1.	'21. 1. 1.	'22. 7. 1.

### 3. 특별연장근로

-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허용('21. 7. 1.~ '22. 12. 31.)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52h + @(8h) = 총 60h

### 4.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현장 대응 및 활용 방안

구분	2주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활용요건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시간	특정주 : 기준근로 48시간까지 - 특정주 : 40+8 → 48h(수당無) - 일반주 : 40-8 → 32h [ 48 <--- 평균(40) ---> 32 ]	특정주 : 기준근로 52시간까지 - 특정주 : 40+12 → 52h(수당無) - 일반주 : 40-12 → 28h [ 52 <--- 평균(40) ---> 28 ]
연장근로	+12시간(별도, 수당지급)	+12시간까지(별도, 수당지급)
최장근로	- 특정주 : 48+12 → 60h(수당) - 일반주 : 32+12 → 44h(수당) [ 60 <---- 평균(52) ----> 44 ]	- 특정주 : 52+12 → 64h(수당) - 일반주 : 28+12 → 40h(수당) [ 64 <--- 평균(52) ----> 40 ]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신고 및 무신고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사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전문건설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회는 회원사가 입찰서 또는 견적서 제출 시 주민세 종업원분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아울러 정부기관에 건의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신고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매월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4조의 2부터 제84조의 7까지
  -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2부터 제85조의 5까지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 4까지

## 2. 면세대상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 면세대상 판단 예시(매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2019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 ① 2019년 1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 계산
  - ② ①에서 구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지 확인
    - 이하일 경우 면세,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 ③ ①, ②를 통해 과세대상일 경우, 실제 납부할 금액은 2019년 1월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납부

## 3. 가산세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무신고) 세액 × 1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한 세액 × 25/100,000 × 경과일수

# 16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철저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2019. 6. 10. ~ 7. 12.)을 실시하였다.

이번 불시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점검과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기간 : 2019. 6. 3.(월) ~ 9. 10.(화)
- 대상 :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
  -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개소, 기획 감독 300개소
- 내용 :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분야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회는 이와 관련된 연구장비 현황과 공동활용 신청방법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1. 사업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련

**2. 대상장비** : 물리적 측정장비 356대 등 총 539대\*

\* 신규구축, 불용처분, 장비상태 등의 사유로 공동활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 3. 신청방법

- 건설연 장비관리시스템(REMS : [rems.kict.re.kr](http://rems.kict.re.kr)) 접속 후 회원가입
- 희망 연구장비 담당자(REMS 시스템에서 확인)와 일정조율
- 공동활용 신청 → 수수료\* → 입금 → 공동활용

\* 수수료는 연구장비 구축금액 기준으로 산정, 중소기업은 내규(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지침)에 의거 공공비용의 20% 할인 가능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요!

18

##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보고사항** : 전화·팩스 또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http://www.cosmis.or.kr)) 활용 가능, 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http://csi.go.kr))」을 새로이 구축하고 '19. 7. 1.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회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회원사가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기에 시회는 많은 회원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1. 교육명 : 2019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2. 교육주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 교육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인원	장소
부산	'19. 9. 27.(금) 13:00~18:00	약 200명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별도 공지 예정

4. 참석대상

시·도 하자보수 담당공무원, 주택관련 협회 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자 등

- 온라인신청
  -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dc.go.kr)상 팝업공지의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 제출
  - 정보마당 → 교육·행사 → 교육 → 해당 지역 신청하기 작성 제출
  -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지역 교육 시작 5일 전 마감
- 온라인 미접수자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 온라인 교육신청자 인원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 제한 가능

5.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의 이해
- 온라인신청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 하자심사 및 분쟁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 알기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특정 조합원 채용강요행위 위법 안내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건설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 자기 조합원 채용 및 확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해행위 및 작업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자기 조합원 채용문구를 임단협, 합이서 등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정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부과한 바 있기에 노조와의 협상 시 해당 채용 문구의 삽입을 제외하는 등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19. 4. 16.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7. 17.부터 시행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노조원 등이 부당하게 자기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수단(3천만원 이하 과태료)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회는 회원사가 자칫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안내하였다.

### 1. 특정 노조 조합원 우선 채용 강요행위

- 사건번호 : 2018고정3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판결선고 : '19. 4. 1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판결 :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의해 「회사는 현장 발생 시 ○○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을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하고 사용자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 영향검토 : 노조의 강요에 의해 입단협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만 처벌
  - ※ 향후, 체결되는 임금단체협상문 등에서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문구는 위법사항이므로 제외**하는 등의 주의 필요

중요!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 •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 2) 신설

※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 • 적용범위

-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 동 법 엄격한 적용 언급
- (변호자 자문) 노조를 포함한 누구라도 채용절차법 적용 가능

• 시행일자 : 2019. 7. 17.(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범위는?

- !**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이므로 2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로서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삭도설치공사의 유지·수선 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3. 또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각각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근거** 건경 58070-728, 1999. 4. 20.



## 하수박스 보수공사 시공자격?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 완료 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 가능한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 8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공사의 하도급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동일 업종 간에 하도급만 가능함.

**근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6. 1. 15.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 판시사항

- 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③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④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판결요지

- 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제13조의 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 2 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인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위반행위의 법적 성격과 내용,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 법적 성격, 법문상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특정되는지, 해석상 그 산정 기준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간편하게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5호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면 그 지급명령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하여졌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의 성질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글 부산사회 여참모 자문 노무사  
(노무법인 부산 삼신 공인노무사)

01

##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사항들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과 달리 근로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되는 내용과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02

## 근로계약과 관련규정 및 위반 시 벌칙

###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p>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제17조(근로조건명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시행일 2012. 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금</li> <li>2. 소정근로시간</li> <li>3. 제55조에 따른 휴일</li> <li>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li> </ol> <p>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시행일 2012. 1. 1.]</p>	<p>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시행일: 부칙 참조(제29010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li> <li>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li> </ol> <p>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2)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7조 및 시행령 8조에서 명시해야 하는 소위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해 놓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필수기재사항의 미기재, 위법기재의 경우 과태료를 규정하여 적법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구분	근로기준법(17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17조)	
명시대상	1. 임금(퇴직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 주요 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임금(퇴직금) 3. 단시간근로자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5. 휴일, 휴가(주휴일, 약정휴가, 연차휴가) 6.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휴가/주휴일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		
조치기준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 시 벌금부과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2014. 8. 1.부)	
위반 시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사법처리)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기간 미기재	50만원
		임금 미작성	50만원
		근로일/근로시간 미기재	50만원
		휴일, 휴가 미기재	30만원
		취업장소, 종사업무 미기재	30만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기재	30만원

03

근로계약  
작성 실무

1) 근로계약 당사자

근로계약은 사용자-근로자 쌍방이 작성주체이므로 사업주(대표이사)와 근로자가 각각 당사자가 됩니다. 보통 계약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갑”, 근로자가 “을”로 표시되며, 현실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가 기재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정년까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있어 입사일만 기재하면 무방하나, 기간제의 경우 입사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로 입사했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근로자로 간주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상 출근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나 현실상 어려우므로 일정기간(예 : 한 달 또는 수개월, 특정업무가 끝나는 시기)을 기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중에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해야 합니다.

**3) 근무장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나, 공사현장 등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그 작업현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뜻합니다. 각 회사나 업종별로 근로시간이 모두 다르겠지만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적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단서규정으로 근무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일기, 공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기재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시키는 것이 적절한 운영일 것입니다.

**5) 근무일/휴일**

근무일은 반드시 월~금만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1주에 1회(근무일만근 시)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6) 임금**

임금은 임금의 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계산방식(기본급은 월 기준 209시간분, 연장수당 : 통상임금의 150% 등), 지급일(예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5일 지급), 지급방법(근로자 명의 계좌이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급기준으로 지급할 시에는 보통 일급은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일급을 고정으로 지급할 때는 그에 대한 구체적 계산기준을 기재하여 일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이 포괄적으로 산입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후 사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의 사전매수”라 하여 위법하다 보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계산,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현실상 연차휴가를 사용케 한다면 위법의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의 사전기재는 행정지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8) 근로계약서의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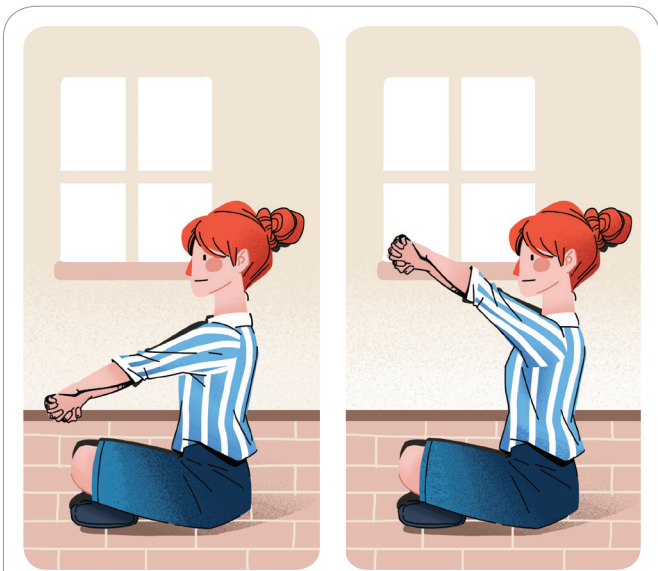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후 교부사실의 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서명날인을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교부사실 확인란을 만들어 이에 직접 서명날인 하게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오랜 시간 자세변화 없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몸 컨디션 및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짧은 시간 투자로 목, 어깨,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어른이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스트레칭 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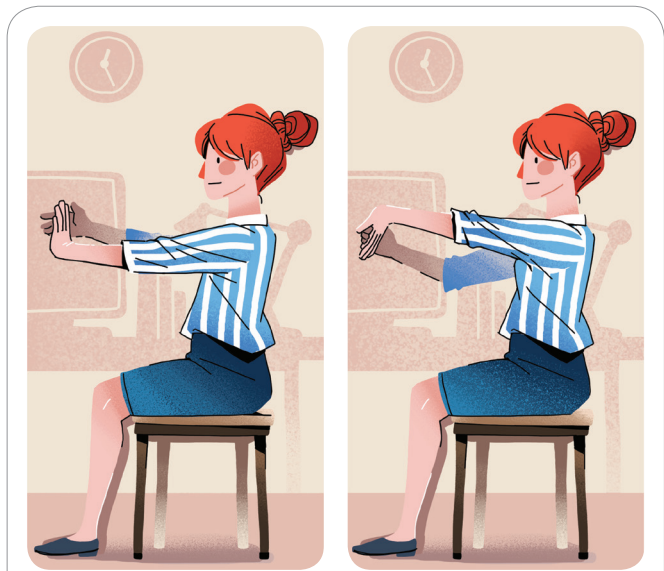


☑ 손목 통증을 예방하는 간단 스트레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마우스 등을 장시간 사용하는 환경 탓에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손목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거북목 등과 같이 현대인의 흔한 질병 중 하나다. 손목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 질환을 예방해보자.



- ❶ 양팔을 앞으로 뻗어 두 손이 엇갈리도록 **깍지를 낀다.**
- ❷ 깍지 낀 손끝이 안쪽으로 오게 말아 올려 **앞으로 쪽 뻗는다.**
- ❸ 숨을 들이쉬면서 **팔을 위로 들어 올려 30초간 유지한다.**
- ❹ 숨을 천천히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 ❺ **양손 번갈아 3세트**를 반복한다.



- ❶ 어깨에 힘을 풀고 **양팔을 앞으로 쪽 편다.**
- ❷ 스트레칭할 **손을 반대쪽 손으로 잡고 당긴다.**
- ❸ 한 번은 **손바닥**, 한 번은 **손등 쪽으로 잡고 번갈아 가며 당긴다.**

# 밖은 덥고 안은 춥다?! 폭염 속 냉방병 주의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활기를 되찾아 주기도 하지만  
지나친 냉방기기 사용이 오히려 냉방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냉방병과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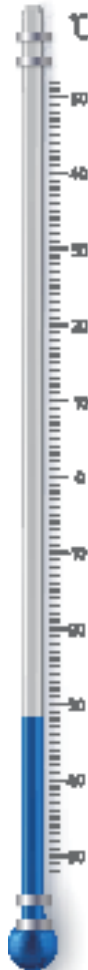
글 송정은

## ❄️ 대표적인 여름 질환, 냉방병

냉방병이란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는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묶어놓은 일종의 증후군이다.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은 아니며, 더위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이 주요인이어서 냉방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냉방병은 마치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기와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라면 냉방병은 발열 증상이 없고, 냉기로부터 차단되면 수일 내로 증상이 회복된다.

냉방병의 주된 증상은 콧물, 코 막힘, 재채기, 두통, 피로감 등이며 어지러움, 소화불량, 식욕감퇴, 신경통, 근육통, 요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평소 몸이 찬 체질이면 복통, 설사 등도 생긴다. 이미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냉방병의 영향이 더 심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저하된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실외로 나오면 호전될 수 있어 어느 정도 더위를 감수하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간혹 에어컨에 서식한다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세균감염도 냉방병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폐렴 증상을 쉽게 일으키고 가벼운 독감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레지오넬라균 감염은 단순히 냉기를 차단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비교적 심각한 감염질환이다.



## ❄️ 으슬으슬 냉방병, 예방하려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내 온도는 25~27°C 사이가 적정하다. 덥다고 느낄 만한 온도지만, 조금만 참으면 신체가 서서히 적응하게 된다. 가능하면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가 5°C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외출 후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앞에서 직접 바람을 쐬는 행동은 금물이다. 땀을 많이 흘린 채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가능한 땀을 다 닦은 후 사용해야 한다. 에어컨 온도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긴소매 옷을 준비해 추위가 느껴지면 껴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냉방병 예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비타민 섭취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신체 면역력을 높여 냉방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에어컨 등의 찬바람은 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목 뒷덜미를 자주 쓰다듬어 주면 좋다. 또 어깨운동을 자주 해서 승모근이 뭉치는 것을 풀어주고 맨손체조 등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아이스커피 등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생강차나 파뿌리차, 말린 콩나물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한 계절에 사계절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름철 냉방은 겨울 추위와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 한다.

#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1



### 타이어 수막현상 예방법

비 오는 날 운전할 때면 수막현상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수막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관리를 자주 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는 백 원짜리 동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감투를 홈 방향으로 끼웠을 때 감투가 안 보이면 괜찮지만, 보인다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된 것이다.

## #2



### 텀블러 친환경 세척법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과 더불어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텀블러는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더 철저해야 한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남은 밥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텀블러의 4분의 1을 따뜻한 물로 채우고 밥 한 숟가락을 넣는다. 뚜껑을 덮어 충분히 흔들고 나면 밥알이 풀어져 물이 뿌옇게

변하는데 밥에서 나온 전분이 냄새를 흡착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 곁에 정신건강 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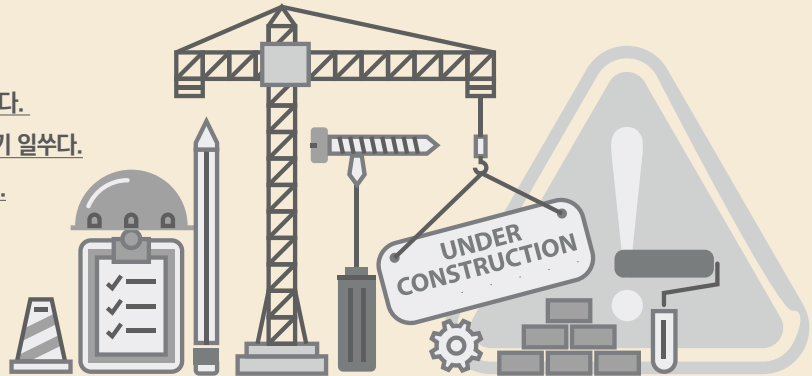
최근 학습, 취업, 직장생활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다. 이용비가 들지 않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전국 사·군·구에 있고, 평일에도 운영된다. 아동, 청소년, 성인 누구나 원한다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051)242-2575



# 하도급 분쟁 상담소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와 분쟁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공정위를 가도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포기하기 일쑤다.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도급 분쟁 해법을 알아보자.



## 공사 관련 자료들의 법적 의미

하도급업체 A사는 원도급업체 B사로부터 발전설비 시스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처 직원들에게 시스템 작동에 대해 교육까지 시켰다. 그런데 B사는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A사가 공사를 준공한 사실도 없고 공정도 지지부진해 A사와 중도에 3억원에 합의해지했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B사의 주장처럼 합의해지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B사가 입증해야 한다. 말로만 합의해지를 주장하고 자료 등에 의해 입증을 못 한다면 법원 재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A사는 공사를 준공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준공확인서 또는 인수인계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B사 주장을 쉽게 일축시킬 수 있다. 그러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툴 소지가 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이러한 경우 판단불가라고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원도급업체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다행히 A사의 경우 발전설비 시스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스템 작동방법에 대해 발주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발주처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은 바가 있었다. 또 발전설비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B사로부터 인수받았다는 사실을 발주처가 확인해줬고 A사는 이 진술을 녹취해뒀어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 자료들은 비록 간접증거이거나 일부만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경우 공정위와 달리 여러 정황과 전후 사정, 경험칙 등을 종합해 '변론의 전 취지'라는 이름하에 준공 여부나 추가공사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하므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상담소

이처럼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단편적인 자료들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 상상 속 가구가 현실이 되는 목공예 공방

도마가 좀 더 얇았으면, 의자가 더 낮고 넓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내 생각대로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은은한 나무의 향을 맡고 손으로 다듬으며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목공예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목공이 주는 생동감,  
삶의 특별한 심포가 필요하다면 목공예에 도전해보자.

글 송정은



## 현대인들의 힐링 도피처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하나씩은 필요하다. 이러한 도피처 가운데 '목공예 공방'은 스트레스도 날리고 성취감도 느끼며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 취미활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공예 공방은 머리가 복잡할 때 내적 힐링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 남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구 제작비용은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구보다 저렴하게 내 취향에 맞는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 서랍장, 나무 반지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작은 소품을 만들며 재미를 느끼고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간단한 방법을 원한다면 DIY

좀 더 쉽게 목공예 취미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DIY(Do It Yourself)용으로 나온 조립 전 가구 세트를 구매하거나 동네 공방을 찾는 것이다. 이케아의 국내 상륙 이후 가구 DIY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뿐 아니라 동네 나무 공방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제품을 팔고 있다.

공방에 따라 자재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공방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공구와 공간을 빌려주기도 한다. DIY에 필요한 공구를 쓰는 법이나 가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를 배울 수 있고 값비싼 전문 공구나 설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가구

공방을 처음 찾은 초보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목재 종류, 원목 특성 등 이론이다. 이어 가장 간단한 사각형 상자, 즉 작은 서랍을 만든다. 미리 재단한 원목에 나사못을 박고 색칠해 마감하는 일이다. 사각 상자를 만들어보면 제작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먼저 가재단한 판재를 직접 테이블소(테이블 기계톱)에 들고 가 도면을 보고 재단한다. 이어 홈파기를 하고 서랍도 단다.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고 경첩도 붙이면 사각형 수납 가구를 온전히 완성한 셈이다. 보통 하나를 배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눈금을 잘못 보는 것이다. 작은 가구는 오차 범위 1mm에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가 나도 맞지 않는다. 초보는 안팎 부분 치수를 헛갈려 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어떤 작품이든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면 단단한 나무로 작품을 만든다. 이때부터 큰 기계를 활용하므로 위험하고 힘들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 DIY



# 회원사 현황

##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9. 04. 01.~06. 30.

 <p>(주)광평산업개발 <b>이한성</b></p> <p>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37번길 52, 207호(남산동)</p> <p><b>T : 051-581-2685</b></p> <p>보유업종 : <b>포장</b></p>	 <p>(주)동국도장 <b>신상동</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5번길 37(안락동)</p> <p><b>T : 051-902-9844</b></p> <p>보유업종 : <b>도장</b></p>	 <p>(주)백억인테리어 <b>장범서</b></p> <p>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69번길 66, 602호(용호동, 아이린빌)</p> <p><b>T : 051-807-4804</b></p> <p>보유업종 : <b>실내건축</b></p>
 <p>부민건설산업(주) <b>현승훈</b></p> <p>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90번길 5, 2층(청학동)</p> <p><b>T : 051-414-1002</b></p> <p>보유업종 : <b>철근-콘크리트</b></p>	 <p>(주)비엔피건설 <b>최경삼</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새동네길 8번길 2(명지동)</p> <p><b>T : 051-263-5884</b></p> <p>보유업종 : <b>토공</b></p>	 <p>(주)비오엔디자인 <b>전제근</b></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번길 7, 3층(사직동)</p> <p><b>T : 051-911-4539</b></p> <p>보유업종 : <b>실내건축</b></p>
 <p>서울조경건설(주) <b>박재복</b></p> <p>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하단동, 1층 씨티파크)</p> <p><b>T : 051-271-1141</b></p> <p>보유업종 : <b>토공</b></p>	 <p>(주)선진디엔씨 <b>박현주</b></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4번길 15, 2층(가야동)</p> <p><b>T : 051-898-9067</b></p> <p>보유업종 : <b>실내건축</b></p>	 <p>아진건설(주) <b>강대욱</b></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201호(재송동)</p> <p><b>T : 051-851-7942</b></p> <p>보유업종 : <b>철근-콘크리트, 조경식재</b></p>
 <p>(주)에스디미래건설 <b>정영진</b></p> <p>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59, 2층(연산동)</p> <p><b>T : 051-710-9681</b></p> <p>보유업종 : <b>습식-방수, 도장</b></p>	 <p>(주)유니온디엔씨 <b>임지용</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업대로 272-5, 301호(녹산동, 한솔드림센터)</p> <p><b>T : 051-740-5083</b></p> <p>보유업종 : <b>토공</b></p>	 <p>(주)유승 <b>김도윤</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215, 409호(신호동)</p> <p><b>T : 051-941-1865</b></p> <p>보유업종 : <b>포장</b></p>
 <p>용이건설(주) <b>김봉수</b></p> <p>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04동 216호(대저동, 부산티플렉스)</p> <p><b>T : 051-914-0255</b></p> <p>보유업종 : <b>금속구조물·창호·온실</b></p>	 <p>(주)이성건설 <b>박희국</b></p> <p>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2번길 13</p> <p><b>T : 051-722-4178</b></p> <p>보유업종 : <b>보링·그라우팅</b></p>	 <p>(주)이한디자인 <b>이대호</b></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1, 1018호(중동, 크리스탈비치 오피스텔)</p> <p><b>T : 051-747-2935</b></p> <p>보유업종 : <b>실내건축</b></p>



(주)진광외장산업  
**남윤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60-1, 3층  
상가 302호(온천동, 성완 아이렉스)  
**T : 051-557-8702**  
보유업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초심건설(주)  
**박현종**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53, 1010호(수영동)  
**T : 051-759-6096**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팩토리디포(FACTORY DEPO)  
**김나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90로  
27-11(송정동)  
**T : 051-832-2366**  
보유업종 : 실내건축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9. 04. 01.-06.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1	경북개발(주)(대표 : 임복근, 경남)	11	(주)세진씨엔씨(대표 : 염총직, 인천)	1	대호알미늄(주)(대표 : 허종태, 제주)
2	(주)경원개발(대표 : 양경화, 경남)	12	신영산업개발(주)(대표 : 박신유, 경남)	2	(주)모든디자인(대표 : 윤병곤, 광주)
3	금영조경(주)(대표 : 김정숙, 인천)	13	오주건설(합자)(대표 : 신봉건, 강원)	3	삼성철강(대표 : 장재형, 경남)
4	단그룹(주)(대표 : 박경모, 경남)	14	(주)인등건설(대표 : 정창근, 강원)	4	(주)미산조경건설(대표 : 최진희, 경남)
5	(주)더파빌리온(대표 : 전형달, 경남)	15	(유)조이건설(대표 : 조승래, 강원)	5	창준디에스(주)(대표 : 장은경, 전북)
6	(주)동일티앤씨(대표 : 김기덕, 경남)	16	(주)창진건설(대표 : 이수미, 경남)	6	(유)태광건설(대표 : 이경애, 전북)
7	(주)미성건설(대표 : 이승란, 경남)	17	휘람건설(주)(대표 : 주아영, 강원)		
8	(주)부마건설(대표 : 김미영, 경남)	18	한누리건설(주)(대표 : 김보미, 경남)		
9	(주)부일하우징(대표 : 허정규, 경남)	19	(주)한성에이디에이(대표 : 김상욱, 경기)		
10	(주)삼화조경(대표 : 손경희, 인천)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9. 06. 30.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31	71	연 제 구	137	218
동 구	50	100	해운대구	227	314
서 구	24	28	수 영 구	112	170
사 하 구	74	97	부산진구	173	233
영 도 구	24	37	북 구	85	113
동 래 구	171	218	사 상 구	122	157
남 구	94	132	강 서 구	201	274
금 정 구	233	346	기 장 군	203	296
			<b>합 계</b>	<b>1,961</b>	<b>2,804</b>

#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01\_ 토사 무너짐(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Cause

##### 위험요인



- 1 우수가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경사면의 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경사면 무너짐(붕괴) 위험
- 2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
  - 빗물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강도 저하
  - 함수량 증가에 따른 배면(뒷면) 토압의 증가
- 3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Safety

##### 안전대책



굴착 경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

- 1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금지 또는 자재 등의 쌓기 금지
- 2 경사면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실시
- 3 현장주변 옹벽, 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설관리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 4 흙막이 지보공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조치

#### Measure

##### 사례 및 대책



##### » 개요

굴삭기를 이용하여 야적된 토사를 절취,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묻혀 있는 배관의 누수 부분을 찾던 중 주변의 성토(법면)지반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

##### » 대책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 굴착 전 사전 지반조사 철저
- 빗물 등 침투방지조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02\_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Cause

#### 위험요인



-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붕괴)·넘어짐 위험
- 강풍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 등의 넘어짐 위험
- 강풍에 의해 날리는 자재·공구 등에 맞음

#### 강풍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

- ▶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 Safety

#### 안전대책



- ① 강풍 시 작업 제한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및 철골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②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실시
- ③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속하거나,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
- ④ 비계 등에 과도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
- ⑤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의 설치 여부 확인
- ⑥ 강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 연기



## 2019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 1 교육일자 및 장소(부산)

교육일자	교육장소
2019. 9. 20.(금)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호선 범내골역 4번 출구)

-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2 교육내용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3 교육대상

-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 20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 2016. 2. 11.)]
- ▶ **교육 참석대상자**
  -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 개인 : 대표자

#### 4 교육시간 : 1일 8시간(9시~ 18시)

#### 5 교육비 :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 영수증 발급 :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 신청방법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문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1076)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김영운 중앙회장은 5월 31일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을 만나 전문건설업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한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근로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왔다. 또한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02**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운)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은 5월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문건설업체 현장 기술애로에 대한 수요를 함께 발굴하고,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통해 전문업체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학술·기술정보를 공유하며 연구원의 시설·장비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의 교육, 기술설명회, 세미나 등 행사와 관련해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03** 김영운 중앙회장은 5월 27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과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을 각각 방문하여 그간 전문건설업계에 보여준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총북 음성)은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일정과 컨소시엄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자 법정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분야 및 등급별 대상자의 최초 기본교육 및 승급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컨소시엄 교육은 건설업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술교육원이 함께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신청은 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kscfcac.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교육원 대표번호로 확인하면 된다.

**0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6월 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제출해야 한다. 이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법 개정에 맞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 및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합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 접속 후 보증 메뉴에서 '현장별 건설기계'를 선택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발급하면 안내에 따라 공사계약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국제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조합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증서 처리내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

**KOSCA 부산시회 2019년 3/4분기 업무단신**

일자	주요 일정
2019년 8월 1일(목)	•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19년 9월 중	• 하도급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 강습회(예정)
	•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예정)
	• 제3차 전문건설인 단합산행(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 (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복건설(주)  
**김지영** 과장

안녕하세요! 어느덧 전문건설업에 종사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IMF라는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 수복건설(주)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네요.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협회가 있기에 저희 전문건설업체들은 힘이 나네요. 수시로 바뀌는 건설업법령 및 제도에 발맞추어 주기적으로 안내해주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천명테크닉스  
**김경구** 대표이사

건설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변경되는 법과 제도를 숙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기마다 보내주는 코스카레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및 판례 역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어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회원을 위해 유익하고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글라스올 정민선 사원
- (유)조이건설 이은화 과장

###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2개 현장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즐기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 6.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금번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공사금액 얼마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이 가능할까요?  
(※ 개정 전에는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이었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 2019. 8. 31.(토)까지)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정)

불공정하도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운영 안내

※ 상담센터 주소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전문건설회관 18층

## 운영 목적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건설 하도급법령과 피해구제 절차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구제방안을 지원

## 센터 기능

하도급관련법령  
(하도급법, 건설산업  
기본법 등) 상담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등

## 센터 운영

- 매주 수요일에 **대면상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 매년 2회(상·하반기) 전국 시·도회를 순회 방문, 회원사 상담 지원

## 상담 신청 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 ([www.kosca.or.kr](http://www.kosca.or.kr)) 접속
- ➔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클릭
  - ➔ 신청서 작성 후 E-mail ([clean@kosca.or.kr](mailto:clean@kosca.or.kr)) 또는 FAX 02-3284-1091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